

제221회 정례회
2003. 12. 22.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새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2003. 12. 22.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3년 12월 12일

○ 회부일자 : 2003년 12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 2003. 12. 19 :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권 기 수)

가. 제안이유

- 현행 충청북도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하고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과감히 감면을 축소·폐지하였으며,
- 수익사업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세전환 또는 감면율을 축소하였고 특정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는 감면세목에서 배제하였으며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 감면 (제5조)

- 수의사업인 의료사업에 대하여 일반 개인병원의 경우 전액 과세하면서 종교단체에 대하여만 취득세·등록세·공동시설세를 면제하던 것을

⇒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50% 경감하고 있으므로 지역간 과세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50% 경감 조정함

○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감면 폐지(제6조)

-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사업용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하였던 것을

⇒ 사업종료에 따라 감면규정을 폐지함

○ 유료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경감(제7조)

-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면제하였으나

⇒ 노인복지시설중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50% 경감함

○ 임차인이 경락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제12조)

- 임대무기간 경과후 임대주택을 최초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감면하였던 것을

⇒ 임대무기간내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임차인이 경락 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분양 받은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감면대상에 포함함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제13조)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50% 경감하였던 것을

⇒ IMF이후 주택경기촉진을 위한 한시적인 지원으로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공동시설세를 면제하였으나
⇒ 임대외무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주택과 같이 면제함
- 지방공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등록세·공동시설세 면제(제19조)
 - 전동차도 부동산과 같이 면제 대상에 포함함
-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감면 폐지 (제24조)
 -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이관하기로 하여 폐지함
- 중부권 복합터미널에 대한 감면 (제28조의2)
 - 복합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50% 경감하였던 것을
⇒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수익률이 낮아 민간사업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면제함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 상 만)

- 충청북도세감면조폐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현행 충청북도세감면조폐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감면기간을 계속 연장하고,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수익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전환 또는 감면을 축소하고,

특정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는 감면 세목에서 배제하고, 조폐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제6조에서 의료지역지구 내 의료시설에 대한 감면 폐지사유로 의료취약지구 의료시설 및 인력보강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도내 의료취약지구로 선정된 영동, 진천, 단양군의 의료시설 현황 및 동 지역의 의료시설에 대한 사업완료 시까지의 감면 실적과
- 제28조에서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50%감면하던 규정을 전액 면제하려는 사유 및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사업의 추진상황,
-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도세 세입의 전반적인 예상 증감변화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7
----------	-----

제출연월일 : 2003년 월 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안이유

- 광주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중 최초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 신체장해 1급 내지 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질병구분에 따라 고도·중등도·
경도장에 해당자

☐ 의안전문 : 따로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으로, “국가유공자”를 각각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 및 일부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민주화운동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된 자(이하 "광주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1. (생략)

2.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자

3. (생략)

■ 광주민주유공자애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장애등급) 법 제4조제2호에서 "장애등급"이라 함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을 말한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대한 진료등) ①~⑥ (생략)

⑦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하생략)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등) ①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및 수당지급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1.8>

②삭제 <2000.2.23>

③삭제 <2001.1.8>

④~⑤ (생략)